

現地에서 본 유럽特許廳의 最近

유럽은 美國·日本 다음의 우리나라의 貿易

3) EPO의 對外協力

(1) 開發途上國과 協力

EPO의 研修計劃에 의거 開發途上國의 審查官의 研修를 매년 3주~5주 단위로 4회정도 實施하고 있으며, 1984年에는 51名의 海外審查官을 訓練시킨 바 있다. 또한 매년 20餘名의 工業所有權 專門家들(주로 審查官)을 開發途上國家에 파견시켜서 特許廳組織·文獻査·特許制度 등에 관한 技術을 支援하고 있다.

EPO는 1985年 4月 10日부로 發效된 中共의 特許法·特許廳組織·特許文獻管理方法 및 씨치 業務에 관한 技術支援을 해주었고, 아프리카 特許協力機構(ESARI PO)設立을 直接支援했으며, 말레지아의 特許情報 文獻센터의 設立에도 參與한 바 있다.

(2) 美國·日本特許廳과의 三角協力

EPO는 1983年부터 協力を 시작한 후 1984年 10月에 뮌헨에서 2次 三角會議(Trilateral Co-operation Conference)를 開催하였다. 이들은 特許情報와 관련 데이터의 相互交換에 합의했고, 電子式 데이터 處理시스템 技術의 共同開發을 시도하고 있으며, 3個國의 特許廳與 節次에 관한 協議가 進行중에 있다. 그러나 3機關의 컴퓨터 시스템의 체재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合議가 完決되는 데는 많은 時間과 研究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 PCT관련 業務

EPO는 PCT業務를 수행하는 國際機關으로서 美國을 비롯한 WIPO 國際事務局·브라질·불가리아·멘마크·핀란드·말라위·모나코·노루웨이·루마니아·스리랑카·수단의 受理官廳(Receiving Office)이다.

또한 헤이그에 있는 DG1은 PCT의 國際調查機關(ISA)의 하나로서 國際調查報告書를 作成하고, 뮌헨本

部는 國際豫備審查機關(IPEA)하나이며, 國內機關으로서 指定官廳 또는 選擇官廳의 業務를 수행한다.

EPO는 EPC締約國의 出願人으로 부터 PCT出願을 받고 있고, 1984年에는 4,258件의 出願을 접수했으며, 그중에서 3,073件이 現在 審查中에 있다. 또 3,568件의 國際調查報告書를 作成한 바 있다.

(4) 其他

EPO는 WIPO·EC共同體·INPADOC等 과도 協力を 強化해 왔다. 특히 INPADOC과 On-line System에 의해 FAMI(the Family System)와 INVE (the System Documentation Inventory System) 및 ECLA (the Classification system)을 利用하고 있다.

그 밖에도 英國 王立도서관·오스트리아·프랑스·스웨덴·스위스·和蘭의 特許廳 및 헤이그支廳(DG1)과 技術情報를 Data-processing system에 의해 相互 교환하고 있다.

(5) 韓國特許廳과 協力

우리나라는 1980年以後 부터 EPO와 協力이 활발해졌다.

매년 EPO研修에 수명의 審查官을 파견시켜서 EPO의 審查實務를 비롯한 多項制와 公開 및 審查請求制度 등의 實務를 研究하고 있으며, 1981年에는 헤이그支廳(DG 1)으로부터 씨치파일(「Pigeon-hole」 filing system)을 導入하여 IPC分類 및 씨치에 活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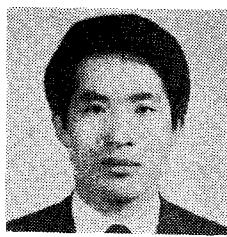
금년 4月에 우리 特許廳長이 EPO를 직접방문하므로서 앞으로 工業所有權 制度發展을 위한 相互協力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韓國特許廳의 現代化계획을 추진하는데 대한 EPO의 관심과 기술지원이 확대될 것이다.

4) EPO 對內動向

유럽特許協約에 의거하여 각 締約國의 國內特許法과 유럽特許法(EPC)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조정작업

動向(2)

對象地



金 元 俊

<特許廳 審查官>

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1985年에는 審查便覽(Guidelines)의 수정판이 Standing Advisory Committee의議決을 거쳐서刊行되었는데, 주요수정된部分은 請求範圍 기재요건·明細書보정分割出願·專門家意見문의費用·動物과人間의의료치료 등에 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 Computer Software에 관련한特許性問題의研究가 1984年에完了되었고, 이에 관한審查方案이研究되고 있다.

EPO는 1984年에는特許出願費用를 대폭 인상하고 자료조사 및 심사료도 인상하므로서 EPO의 1984年度의 예산은歲入과歲出이 각각 3억 2천 4백만 마르크(韓貨: 1,135억 4천 만원)으로서 예산收支均衡을維持하고 있다. 그러나 1984年도 우리廳의 예산은歲入(25억 4천 만원)과歲出(47억 8천 만원)이었는데 EPO의 예산과 비교해 보면歲入은 2.2%,歲出은 4.2%에 불과하며,歲出入收支도 불균형한 상태이다.

참고로 84年度美國特許廳의歲出(1,330억 원)에 대한歲入(1,418억 원)의비율이 107%이고, 日本特許廳의歲出(204억 원)에 대한歲入(307억 원)의비율이 150로 각각 흑자예산 경영을 한바 있다.

따라서 現在 우리特許廳이特許行政長期發展計劃으로 추진하고 있는獨立採算制導入을 위한 特別會計設置는特許行政의現代化를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 유럽特許出願 및 審查範次

유럽特許條約은全文 178個條(Art)의特許法(European Patent Convention : EPO)과全文 106個條(Rule)의施行規則(Implementing Regula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럽特許廳의細部審查基準인 審查便覽(Guideline for Examination)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調査速報

이달의 目次

V. 유럽特許出願 및 審查範次

〈다음號에 繼續〉

審查官은 이런規定들을 바탕으로特許審查를進行하게 되는데, 우리와 다른점은 3名의技術審查官에 의한合意體共同審查이고, Search와 實體審查가 완전히 구분되고,異議申請節次와 時期·口頭審理(Oral Proceedings)등이 다르다.

유럽特許廳에 出願된出願書는 다음〈表9〉와 같은節次에 의해 처리되어진다.

유럽特許가出願되어서登錄되기까지는通常4年내지5년이 소요되는데, 보통2年내지3년정도 소요되는우리의 경우보다는약간審查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出願件數의增加와 씨치와 實體審查의 엄격한 분리에 있는 것 같다.

1) 出願의 接受

유럽特許出願은 원행의EPO本部나 해이그支廳에 세接受하여, 또한 約國의特許廳에서도接受한다.

모든書類는 EPO의 DG1으로 移官되고出願人에게는 접수증이 발급된다. 매년特許出願件數는 약4萬件정도이다.

2) 受理 및 方式審查

DG1의Receiving Section에서는 출원서가施行規則요건에 맞는지를 검토하고出願料와資料調查料와翻譯된出願書類 등을 접경한뒤完備된出願에 대해서는特許出願日과出願番號를 통지하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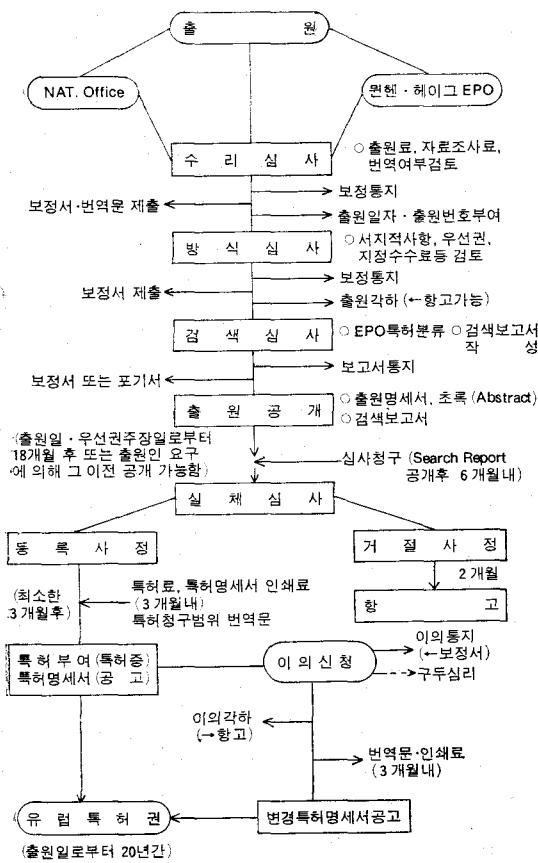
이어서出願日이確定된出願에 대해서는優先權主張書類·指定手數料·代理人선임여부 및初錄(Abstract)添附등의方式審查를 한다.

3) 檢索審查

Receiving Section에서出願日이確定되고,取下되지 않은出願은IPC分類로 정확히分類되어 해당審查官에의하여Search되고이어서檢索報告書(Search

調查速報

〈表 9〉 유럽특허출원심사절차도



Report)가 작성된다. 이 报告書는 인용참증과 함께 出願人에게 통지된다.

참고로 檢索審查에 소요되는 기간은 出願후 18個月
내지 19個月이 소요되는데 대체 公開時期와 비슷하다.

4) 特許出願의 公開

유럽特許出願은 出願日로부터 18個月이 지난후나 優先權主張이 있으면 優先權主張日로부터 18個月이 지난

후 즉시 公開한다. 그러나 出願인의 要求에 따라 더 빨리 公開할 수도 있다.

公開되는 내용은 상세한 說明·청구범위·圖面·초록(Abstract) 및 출원公開前에 작성된(이 경우는 全出願의 50%정도임) Search Report와 함께公開한다.

5) 實體審查

出願人은 유럽特許公報에 檢索報告書를 포함한 出願公開가 있는날로부터 6個月이내에 審查請求할 수 있고 이 기간내에 審查請求가 없으면 그 出願은 取下된 것으로 본다.

審査請求가 있고 手數料 納付가 끝난 出願書類는 Search Report와 함께 DG1에서 DG2로 보내진다.

DG2에 移官된 出願書는 IPC分類에 따라(必要한 경우에는 EPO내부分類의 使用)관련 技術分野의 해당 審查局으로 移送되어지며, 3人の 技術審查官에 의한 審查部(Third Parties Examination Division)가 구성되게 된다.

특히 이 實體審査과정에서 注目할만한 점은 出願人과의 意見交換이 自由롭고 비판적이며 매우 中立的이다. 또 出願의 補正이 우리에 비해서 嚴格하고, 必要에 따라서 公式的인 口頭審査를 活用하여 審査하기도 한다.

6) 查定

特許出願이 EPC의 要件(Art91, Rule 51)를 充足시
키는 경우에는 登錄査定되고 充足되지 못한 경우에는
拒絕된다.

특허권과 결정은 담당 검사관(Primary Examiner)이
특허 검토에 필요한 TEXT를 검사부에 제시하면 검사
부는 이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 3명의 검사관 중 적
어도 두명의 동의가 있어야 특허권과 결정된다.

特許登録은 出願人이 手數料와 번역된 請求範圍(3個共用語)의 提出한 후에 이루어진다. EPO의 登錄件數는

■ 韓國發明特許協會 캠페이 ■

| | | | |
|------|------|------|------|
| 낭비없는 | 알뜰피서 | 가족끼리 | 오손도손 |
| 정직앞에 | 불신없고 | 공정앞에 | 불평없다 |
| 에너지는 | 국력이다 | 아껴써서 | 애국하자 |

新 刊 案 内

1984년의 경우 13,312件이 있는데 1983년보다 38%가 증가된 숫자이며 이중에서 65%는 締約國에, 35%는 非締約國에 特許가 許與되었다.

7) 抗告審判

受理課·審查部·異議部에서 내려진 모든 決定(특히 대개 경우 拒絕事定에 대한 不服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出願人은 抗告審判을 請求할 수 있는데, 決定 통지를 받은 후 2個月이내에 해야한다.

청구된 抗告審判은 DG3에서 처리하기 전에 먼저 DG2의 해당 審查部로 보내지며 되며 審查部에서는 抗告請求時 제출된 보정서를 참조하여 그 決定을 변복할 수 있다. 만일 審查部에서 그 決定을 변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抗告審判請求件은 DG3로 보내어져서 抗告審判部(Boards of Appeal)가 구성되어지고 있어서 審理를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는 日本特許制度에서 볼 수 있는 審查轉置主義의 유사한 것이다.

8) 이의신청

유럽特許法은 登錄査定後 9個月안에 누구든지 异議를 提起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점이다.

즉 出願公告에 대한 异議申請이 아니고 이미 特許許與된 特許權에 대한 异議申請이다. 따라서 抛棄 또는 消滅(lapsed)된 特許에 대하여도 异議申請이 가능하고 審查部에서도 异議申請할 수 있다.

异議申請에 대한 審查는 3人の 技術審查官에 의한 合議體로 진행되며, 必要한 경우에는 口頭審理(Oral Proceeding)가 행해지고, 이때 이의결정은 이의부의 議長(Chairman)이 口頭로 즉석에서 決定한다.

9) 유럽特許權

유럽特許權은 유럽特許公報에 公告된 날로부터 그 效力이 발생되고 有效期間은 出願日로부터 20年間이다. 또한 이 特許權이 締約國에 發效될 때 締約國 特許廳에서 부여되는 特許權과 동일한 效力이 인정되며, 特許權의 侵害은 항고심판에서 다루워지지 않고 각 締約國의 國內法에 의해 다루워진다.

10) 口頭審理(Oral Proceeding)

우리나라 特許法 제113조(審理)에 의거 當特許廳에서도 無效審判에 대한 口頭審理를 운영하고 있고, 特

許法 第106條에 의거 3人の 審判合議體가 있어서 이 口頭審理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는 制度이다.

유럽特許廳의 경우에는 實體審查의 과정이나 异議申請과정에서 이 制度를 活用하고 있어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異議申請과정에서 出願人이나 申議申請人의 要求가 있을 경우는 所定의 절차에 의해서 口頭審理가 成立된다. 이때 3名의 技術審查官에 의한 异議審查部가 구성되어, 出願의 公告決定에 참여한 擔當審查官(Primary Examiner)이 審理를 主宰하고 최종결정은 議長이 구두로 즉석에서 한다.

1984년에 EPO에선 2,258件의 异議申請이 있는데 이중에서 108件이 口頭審理에 의해 決定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5년이전까지 약 120件의 구두심리가 있었는데 매년 15件정도 審理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當廳에서 지난 4月부터 廳舍移轉과 함께 審判정을 새로 설치하고 口頭審理를 확대실시할 계획을 發表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절차는 公正하고 內實있는 審判制度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계속>

<31page에서 계속>

註 1. 發明情報

發明情報란 發明 그 自體에 關한 技術情報 를 말한다. 即 發明에 直接的으로 또는 本質的으로 關係하는 技術主體를 말한다. 여기서 技術主體란 發明으로서 具現化되어 있는 「物」을 말하며, 通常 特許請求範圍에 依해 把握된다.

註 2. 參考情報

明細書中에는 發明情報로는 되지 않으나 有用하다고 생각되는 情報가 包含되어 있다. 參考情報은 그 중에 하나이다. 即 發明情報은 되지 않으나 技術的으로 注目하여야 할 事項을 말한다.

分類整理時 可能하면 參考情報도 分類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參考情報은 IPC의 Section앞에 「〃」로 表示한다.

註 3. 相補情報

發明情報 또는 參考情報와는 달리 發明情報에 對한 分類와 相補關係에 있고 發明情報의 他의 構成要素를 나타내는 것을 相補情報라 한다. 相補情報은 ()내에 記入된 情報이다. (IPC의 表示例 參考). (※)